

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등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

부

칙

① 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조례는 다른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

까지 시행한다.

신 규 조 문 대 비 표

현 형	개 정 안
<p>제1조(면제대상) 1 다음각호의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토지 및 건축물을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.</p> <p>1.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</p> <p>2.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</p> <p>3. 고용부의 우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우수연수원</p> <p>4.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·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</p> <p>5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</p> <p>(신설)</p>	<p>제1조(면제대상) 1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</p>